

『구미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) 결정(폐지)(안)에 대한 의견제시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4월 5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4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4월 13일

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도시건설국장 남병국

나. 제안이유

- 토미공원은 1987년 2월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결정(건교부 고시 제42호, 1987.02.07.)되었으나, 장기간에 걸쳐 공원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2020년 7월 사유지의 미집행구간이 실효 결정(구미시 고시 제2020-188호, 2020.07.02)되었고, 경상북도(교육감) 소유의 산32-1번지 역시 2012년 12월 공원조성계획 결정(구미시 고시 제2012-202호, 2012.12.20) 이후, 공원조성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

- 따라서 최초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, 약 36년간 미집행 상태로

방치되어 사실상 공원의 효력을 상실한 토미공원을 폐지하고, 토미공원 내 경상북도(교육감) 소유부지에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 구미도서관을 이전 조성하여 명품 교육도시의 위상에 맞는 창의·융합형 인재 육성의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의 문화요구를 충족하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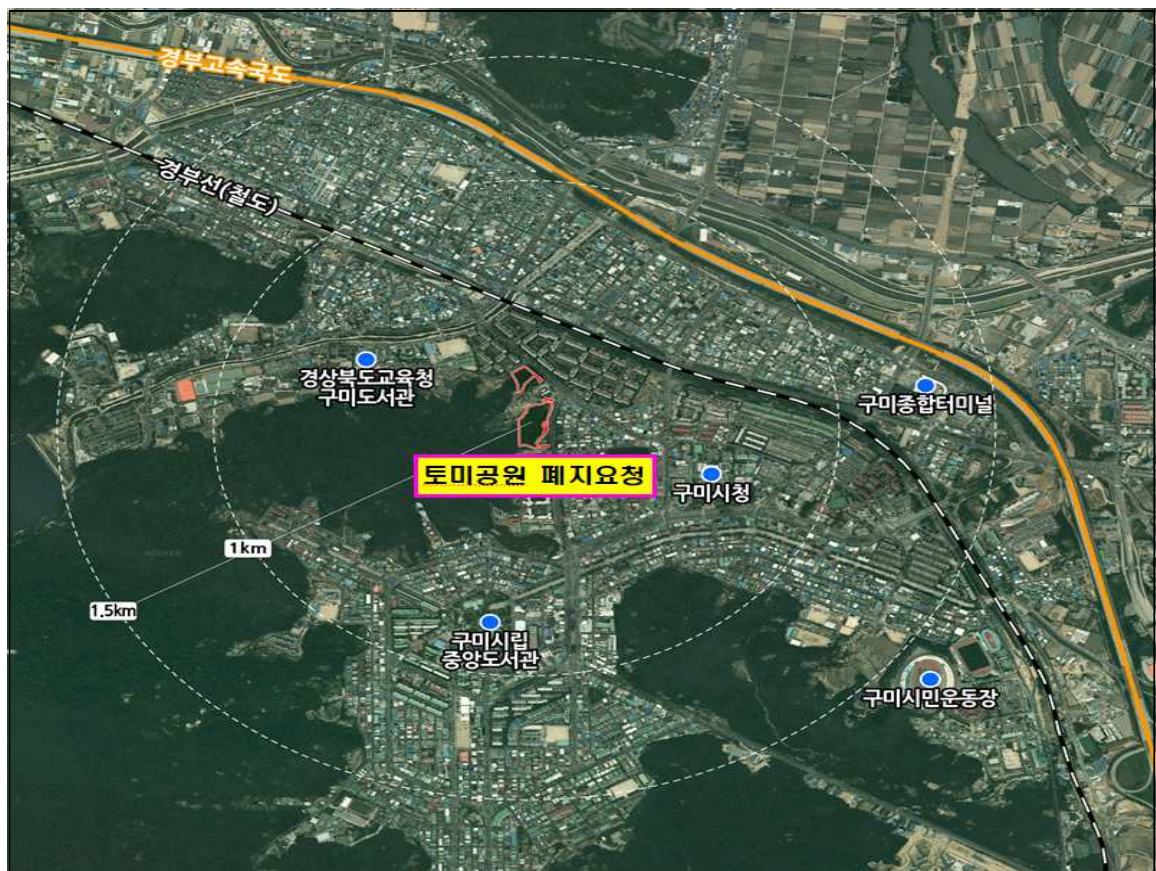
다. 주요내용

○ 공간시설(공원) 폐지

○ 근린공원(토미공원) 폐지

- 위 치 : 구미시 원평동 산32-1번지 일원
- 면 적 : 19,717m²

○ 위 치 도(토미공원)



○ 드론 촬영 지도(북남 방향)



※ 가운데 부분은 사유지로 2020년 7월 실효 결정되었음

○ 위성 지도(남북 방향)

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」 제2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- 본 「구미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)결정(폐지)(안)에 대한 의견제시」의 전은,

- 구미시 원평동 산32-1번지 일원 근린공원(토미공원)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써,
- 1987년 2월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어 공원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일부 사유지 구간이 실효 결정(2020.7.2.) 됨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찬성의견

※ 붙임 : 의견서 1부

『구미 도시관리계획(근린공원)결정(폐지)(안)에 대한 의견제시』 의 건 의 건 서

□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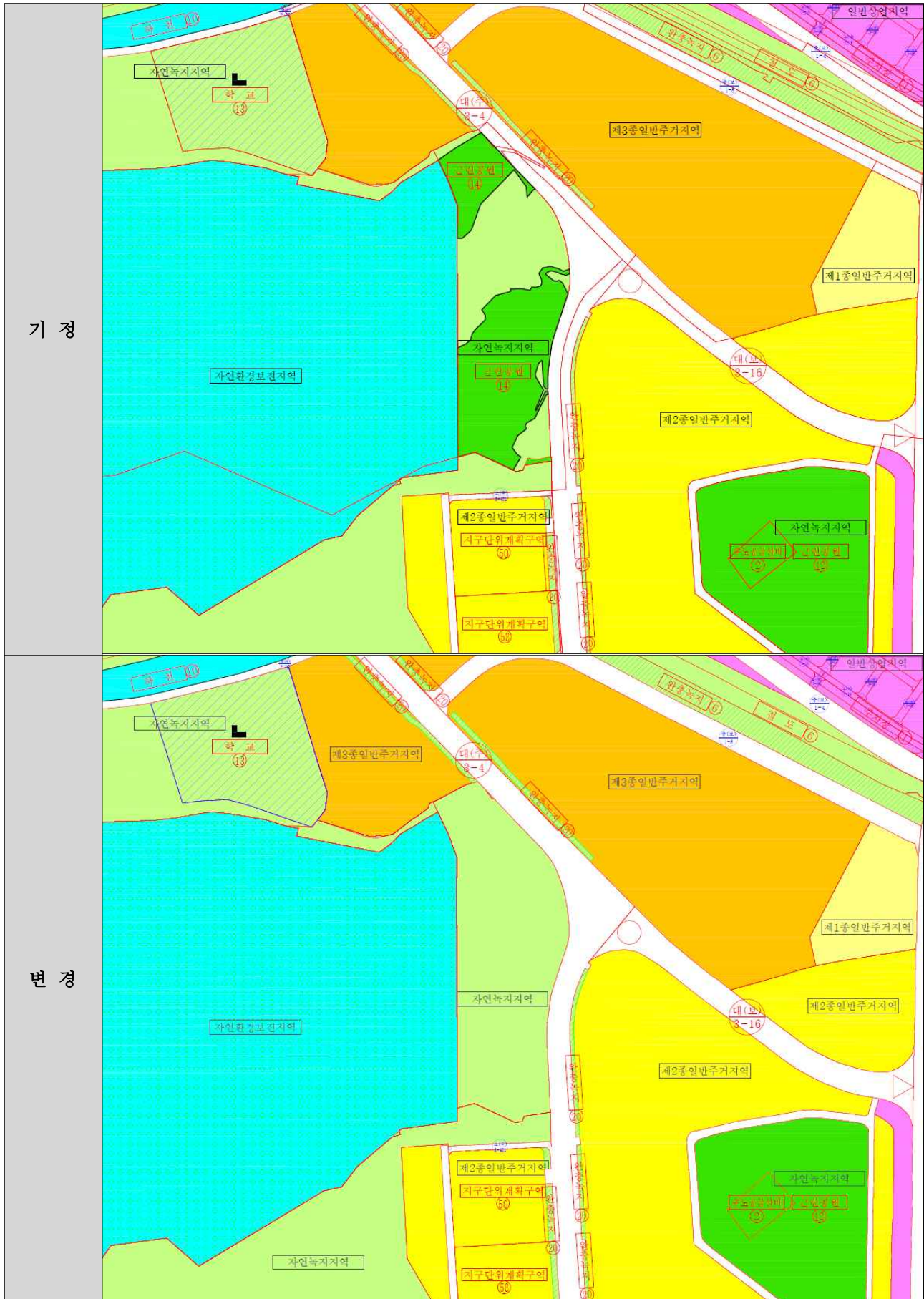
■ 공원 결정(폐지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폐 지	14	토미	근린 공원	원평동 산32-1 번지 일원	19,717	감) 19,717	-	건교부 제42호 (‘87.02.07)	자연 녹지 지역

■ 공원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4	토미	공원폐지 A=19,717㎡ → 0㎡ (감 : 19,717㎡)	노후된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이전 조성을 위하여 공원으로서의 효력을 사실상 상실한 근린공원을 폐지하고자 함

<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(폐지)(안) 도>



□ 의견사항

○ 찬성의견 채택으로,

-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)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어 공원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.